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 징수 업무의
관할 세무서장 위탁 근거 마련〉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6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황승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채현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후단 신설 등).

[illegible]

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	---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그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 강제징수¹⁾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3조제5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해당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²⁾

1) 「국세징수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에 따라 국세의 “체납처분”이 “강제징수”로 법률 용어가 변경됨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 따른 반납금 징수 의뢰는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원활한 반납금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³⁾

개정안은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안에 관한 법적 규율 관계를 행정기관 간 행정권한의 위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행정법상의 과징금, 환수금, 부가금, 반납금, 체납액 등 각종 금전을 징수하는 행정권한과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유사 규정 법제처 법령해석례(10-0298, 2010.11.5.)]

“현행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 의뢰,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며,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명예퇴직수당의 징수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그 의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하 생략)”

하도록 하되 해당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는바,⁴⁾

개정안도 이와 같이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 반납금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사무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무의무 불이행 등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공무원 위탁 교육훈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세 체납처분”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국세 강제징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에 따라 국세의 “체납처분”이

4)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생략)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생략)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④ (생략)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⑦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강제징수”로 법률 용어가 변경됨⁵⁾에 따라 「공무원 인재개발법」 상 교육훈련경비 반납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동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용어를 법문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동법 제78조의2 등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생략하여 법문의 간결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3)이 202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5) 개정사유 :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인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6)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 의뢰 규정은 당사자가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에 불응하는 등 장기 미환수 사례⁷⁾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력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는바,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무의무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교육훈련경비 환수 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밝히고 있음.⁸⁾

문 의 처
02)6788-5342

7) 국외훈련 : 의무복무위반 1건('16년, 15,146,320원), 국내훈련 : 훈련중단 1건('18년 6,639,000원), 의무복무위반 1건('19년, 17,739,000원)

8) 이와 관련하여 2026년 7월 13일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